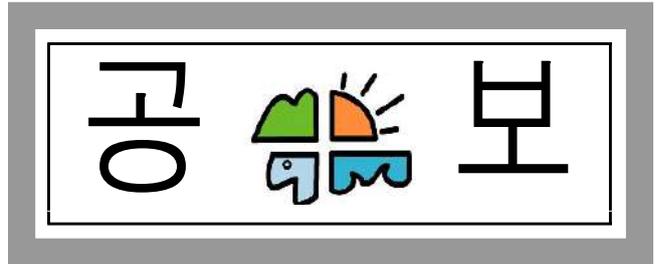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54호 2020년 3월 27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공 고

-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행정예고 4

입법예고

-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
-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2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속초시고시 제2020-44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초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6	20~22	주간선 도로	1,154	교동 620-37 중로1-1	교동 784-37 중로1-1	일반 도로	건고제37호 (1976.03.27.)	폭원 변경
변경	중로	1	26	20~26 (6)	주간선 도로	1,154 (150)	교동 620-37 중로1-1	교동 784-37 중로1-1	일반 도로	건고제37호 (1976.03.27.)	
기정	중로	3	19	12	보조간선도 로	1,293	속초시 금호동	속초시 금호동	일반 도로	1987.02.17	
변경	중로	3	19	12~15 (3)	보조간선도 로	1,293 (110)	속초시 금호동	속초시 금호동	일반 도로	1987.02.17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26	중로1-26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B : 20~22m → B : 20~26m	○ 공원 및 비공원시설 진출입부의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폭원 변경
변경	중로3-19	중로3-19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B : 12m → B : 12~15m	○ 비공원시설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일부 폭원 변경

속초 도시관리계획(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4,203.5	-	34,203.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203.5	-	34,203.5	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3	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326번지 일원	33,993	증) 210.5	34,203.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33	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변경 - 33,993㎡ → 34,203.5 ㎡ (증 210.5㎡)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6. (20일간)
2.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2020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2,213,000원/m³
7. 시행예정일 : 2020년 5월 1일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0. 4. 15.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99(우24900),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 팩스 : ☎033-639-2497
- 문의처 : 속초시 하수도사업소(☎033-639-294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Blank area for submitting the opinion.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속초시 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안 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재정 지원 기준 마련(안 제7조)
- 마.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 연 락 처 : 033-639-2723 (FAX 033-639-2385)
- 전자메일 : kamj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033-639-2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속초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
- 나. 공무원 근로자
- 다. 기간제 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7만원	2회
의료비	제5조제2호	20만원	1. 정신의학 관련 진료 2. 외상치료 3. 1 ~ 2 처방에 따른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1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	제5조제4호	‘민원상담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5일 이내	대상은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6조	예산의 범위 내	

※ 비고 : 세부기준란 중 횟수 제한은 동일한 민원에 한정한다.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한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나. 민원담당공무원 지원을 위한 신청절차(신청서) 규정(안 제3조)
- 다. 부서장의 승인사항 마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 연 락 처 : 033-639-2723 (FAX 033-639-2385)
- 전자메일 : kamj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033-639-2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부서장의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생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명 :	연락처	
민원 내용	◦ 민원제목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목록 작성		
지원신청 내용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input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type="checkbox"/>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속 초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제 130호, 2020. 5. 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 현 행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 개 정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재무회계규칙 재편)

- 유사·중복 규정 삭제(공통사항 행안부 훈령으로 존치)
- 현행 160개 조문 ⇒ 9개 조문

다. (재정사항 합의사항 조정)

- 재정사항 합의 한도에 대한 기준과 방법 명확히 설정

3. 개정규칙안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전자우편(이메일) : kgs0404@korea.kr
- 2)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회계과)
- 3) 팩 스 : 033-639-2173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 경리팀(033-639-2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회계법
-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자택, 사무실 등)

자치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53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제85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로 개정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국장	-	-
징 수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 관·과장	-	관서의 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 무관이 지정한 경비)	-	-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징수담당, 세외수 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	-	주무담당
세 입 세 출 납 외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 현 금 출 납 외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동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담당	회계과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부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부	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전부	
8. 기타 경비 ¹⁾	전부	전부	

※ 합의 방법

1. 합의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담당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은 후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2. 합의자가 담당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담당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는다.

1)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리담당 합의를 받는다.(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포함)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전부	